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-31호
청진구역제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1-73호(2001.07.06)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같은고시 제2003-15호(2003.02.15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같은고시 제2003-92호(2003.12.26) 및 제2004-4호(2004. 2. 20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같은고시 제16(2004. 4. 26)호로 관리처분변경인가된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(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2항)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(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5항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07년 6월 29일

종 로 구 청 장

1. 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(구 도심재개발사업)
2. 시행구역위치 :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외 91필지
(확정예정필지 : 종로구 종로1가 24번지 외7필지)
3. 사업시행면적 : 8,655.50㎡(대지 : 6,783.40㎡, 공공용지 : 1,872.10㎡)
확정측량면적 : 8,636.10㎡(대지 : 6,757.50㎡, 공공용지 : 1,878.60㎡)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르메이에르건설주식회사 대표 정경태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-1 전경련회관 15층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07년 6월 28일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용
 - 근거 :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
(구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)
 - 확정측량에 의한 토지면적 변경 및 판매시설 호수 세분등 건축계획의 경미한

변경 신고에 따른 토지면적 정리와 판매시설 호수 및 면적정리를 위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

- 분양대상자 : 총4인(사업시행자, 전수통전민식, (사)한국잡지협회, 홍순하) : 변경없음
- 현금청산자 : 이건호 외 5인(이건호, 이견주, 이애자, 이명혜, 이견송, 백영숙) : 변경없음

○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면적 변경

구 분	당 초	변 경	증·감	비고
시행면적(m ²)	8,655.50	8,636.10	감) 19.40	확정측량에 의거
대지면적(m ²)	6,783.40	6,757.50	감) 25.90	확정측량에 의거
도로면적(m ²)	1,060.20	1,077.00	증) 16.80	확정측량에 의거
공원면적(m ²)	811.90	801.60	감) 10.30	확정측량에 의거

○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판매시설 호수 증가:분양대상자 지분은 변경없음

구 분	당 초	변 경	증·감	비고
판매시설	205호	353호	증) 148	면적증감 없음
오피스텔	529호실	529호실	변경없음	변경없음

○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변동 :

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총 4인에서 1인으로 변경(전수통전민식)

○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규모 등 : 지하7층/지상20층

토지이용현황(㎡)				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				
계	건축시설	공공시설		건축규모 (연면적,㎡)	공급계획(연면적,㎡)			
		도로	공원	업무시설,판매 및 영업시설,운동시설	계	토지등 소유자	시행자 (일반분양)	보류시설
8,636.10	6,757.50	1,077.00	801.60	91,176.69	91,716.69	1,653.59	89,969.85	93.25

○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(위치변경 없음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· 감	비고
도로면적(㎡)	1,060.20	1,077.00	증) 16.80	확정측량에 의거
공원면적(㎡)	811.90	801.60	감) 10.30	확정측량에 의거

○ 용도폐지되는 종전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: 변동사항 없음

7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㉠731-1421~4). 끝.